제27판 문운당 영양사 요점정리 정오표 (1쇄)

1권 정오표

페이지	오	정
4p 11번째 줄	내용 수정 ② 권장섭취량(recommended nutrient intake : RNI) : 영양소 필요량의거가 충분한 경우	② 권장섭취량(recommended nutrient intake : RNI) :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
5p 표	표 내용 수정 단백질 7~20%	단백질 10~20%
14p 밑에서 7번째 줄	탄수화물 섭취 기준 55~65%	탄수화물 섭취 기준 50~65%
144p 17번째 줄	내용 수정 4) 무기질 ③ 아연 • 0~5개월 충분섭취량 5 mg, 6~11개월 권장섭취량 5 mg	4) 무기질 ③ 아연 • 0~5개월 충분섭취량 2 mg, 6~11개월 권장섭취량 3 mg
152p 6번째 줄	내용 수정 (4) 탄수화물 ② 1~5세 총 에너지의 55~65%	(4) 탄수화물 ② 1~5세 총 에너지의 50~65%
156p 5번째 줄	내용 수정 3) 탄수화물 ① 에너지 적정섭취비율 : 55 ~ 65 % ②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: 6 ~ 8세 남아 25 g, 여아 20 g, 9~11세 남아 25 g, 여아 25 g,	3) 탄수화물 ① 에너지 적정섭취비율 : 50 ~ 65 % ②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: 6 ~ 8세 남아 20 g, 여아 15 g, 9~11세 남아 20 g, 여아 20 g,
159p 표	표 내용 수정 청소년기의 영양소 섭취기준(권장섭취량) 인 / 여자 / 15~18세 / 1100	청소년기의 영양소 섭취기준(권장섭취량) 인 / 여자 / 15~18세 / 1000
163p 9번째 줄	내용 수정 2) 탄수화물 ③ 식이섬유는 충분섭취량(12 g/1,000 kcal)으로	2) 탄수화물 ③ 식이섬유는 충분섭취량(12.5 g/1,000 kcal)으로

※ 1권 말미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2권 정오표

페이지	오	정
19p 아래에서 8째줄	단어 수정 • PRECEDE (요구도 진단단계) : <3단계> 교육 및 생태적 진단_동기부여·강화·강화 요인	• PRECEDE (요구도 진단단계) : <3단계> 교육 및 생태적 진단_동기부여·가능·강화 요인
40p 하단	내용 수정 ⑨ 두뇌충격법(브레인스토밍, brainstorming)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끌어내는 집단 발상 기법 • 대상: 일반 대중보다는 특정 분야의 지도자 및 전문가 교육에 적합함 • 진행: 참가자들이 당면한 과제나 지역사회 발전 계획에 관해 스스로 연구하고, 권위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토의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 • 규모 및 기간: 보통 3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하며, 2~3일에서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	⑨ 두뇌 충격법(브레인스토밍) •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참가자 전원이 차례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최선책을 결정하는 방법임 •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한 다음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함 •참가인원은 10명 정도로 구성함 •회의 시간은 10~20분까지 다양하며 보통 2~3회 반복 시행함

3권 정오표

페이지	오	정
19p 보충 두번째줄	오타 수정 • 당의 쇄상구조에서 이성질체의 수 포도당 : 부제탄소의 수 4, 이성질체의 수 : 24 = 16	• 당의 쇄상구조에서 이성질체의 수 포도당 : 부제탄소의 수 4, 이성질체의 수 : 2^4 = 16
36p 중간부분	오타 수정 ② 융점(녹는점) •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음 •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보다 융점이 높으며 이중결합수가 많을수록 융점 낮음. 예 스테아르산($C_{18:0}$) > 올레산($C_{18:1}$) > 리놀렌산($C_{18:2}$) > 리놀레산($C_{18:3}$)	② 융점(녹는점) •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음 •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보다 융점이 높으며 이중결합수가 많을수록 융점 낮음. 예 스테아르산($C_{18:0}$) > 올레산($C_{18:1}$) > 리놀레산($C_{18:2}$) > 리놀렌산($C_{18:3}$)
82p 밑에서 6번째 줄	내용 수정 (9) 떫은맛 (삽미, astringency) 1) 타닌류 ③ 녹차 : 테아닌(theanin)	(9) 떫은맛 (삽미, astringency) 1) 타닌류 ③ 녹차 : 카테킨(catechin)

4권 정오표

페이지	오	정
5p 15번째 줄	내용 수정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.	제52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.
39p 19번째 줄	단어 교체 집합선택 계측방법 사용 – 개인별 식사 후 잔식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	집합선택 계측방법 사용 – 개인별 식사 후 잔반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
64p 2번째 줄	단어 교체 1) 온도·시간관리 가열조리공정 중 온도와 시간은 다량조리에서 식품의 변화의 큰 요인.	1) 온도·시간관리 가열조리공정 중 온도와 시간은 대량조리에서 식품의 변화의 큰 요인.
74p 중간	내용 수정 • 익힌 음식(냉장고 위칸)과 날 음식은 하단에 분리하여 배치, 생선, 육류는 하단에 채소와 가공식품은 상단에 저장 • 선반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15 cm 간격 유지, (냉장고 아래칸) 분리 보관, 뚜껑 덮어 보관	• 익힌 음식(냉장고 위칸)과 날 음식(냉장고 아래칸) 분리보관, 뚜껑 덮어 보관, 생선, 육류는 하단에 채소와 가공식품은 상단에 저장 • 선반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15 cm 간격 유지

페이지	오	정
231p	단어 교체 제 72 조 (폐기처분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, 기준·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기준·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, 유독기구 등의 판매·사용 금지, 기준·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·용기·포장 사용 금지,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표시가 없는 경우,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·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·판매의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·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·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·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제 72 조 (폐기처분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, 기준·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기준·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, 유독기구 등의 판매·사용 금지, 기준·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·용기·포장 사용 금지, 유전자 변형 식품에 표시가 없는 경우,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·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·판매의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·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·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·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244p	단어 교체 제 97 조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. (제12조 2 제2항)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위반	제 97 조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. (제12조 2 제2항)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위반

4권 정오표

페이지	오	정
295~ 296p	내용 ③~⑧ 전체 교체 영 5조의 2(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)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 1.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.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 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영 5조의 2(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)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<2023. 12. 12.> ④ 삭제 <2023. 12. 12.> 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12.>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3. 12. 12.>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12.> ⑧ 삭제 <2023. 12. 12.>